

---

##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중복보상 조정방법 연구

(A Study on the Provisions to Adjust Dual Compensation between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마승렬\* · 김명규\*\*  
Seungryul, Ma Myungkyu, Kim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중복보상 조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상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상연금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복보상 조정을 위해 청구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청구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동안 보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기 미결 건을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상을 먼저 청구 하는 경우와 자동차보험에 먼저 청구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상효과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연금 청구시점에서 연금의 현가를 산정한 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산하여 종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그 효과도 살펴보았다.

※ 국문색인어: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복보상, 보상연금, 연금의 현가

---

\*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손해사정사, 경영학박사(보험금융 전공)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손해사정사

## I.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표현함)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산재보험법제1조(목적) 참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한 쪽에서 먼저 보상을 받은 경우 동일사고에 대하여 이중 보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각각 중복보상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이 동일하다면 이들 간의 중복급여 조정 문제에는 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 및 보상방법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산재보험의 보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과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연금액과의 조정방법이 필요한데 이때의 조정방법으로는 자동차보험금을 산재보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환산한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가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시점부터 환산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는 연금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기 미결 건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산재보험의 중복보상 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었던 민원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원인 유모씨는 1991년에 산재를 당한 후 지난해 7월까지 20년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가 되지 않자 산재 요양을 끝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2급 판정을 받아 2011년 8월부터 장해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산재 당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연금이 시작되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7개월 동안 연금이 지급 정지되어 받지 못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유씨가 20년전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령에 따른 연금지급 중지사유에 해당은 되지만, 현재 연금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27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이후에 받게 될 연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표명해 최근 공단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 유씨는 2013년 10월 이후에 받게 될 장해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략)...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보험제도 중복수혜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지급중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2.03.22)에서 인용]

이와 같은 민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 당사자는 현행의 중복급여 조정방법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각각의 보험제도에 있어서의 보상방법과 보험금지급기준 및 양자 간의 이중보상 조정규정 등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련 전문가(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가들이 양 제도 모두에 있어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청구방법에 따라 피해자는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 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이들 제도 간의 중복보상 조정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효과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중복급여 조정 문제는 ①자동차사고가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의 행위로 야기된 경우와 ②자동차사고가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행위로 야기되어 그 제3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발생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가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의 행위로 야기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고 판례도 같다. 이는 산재보험 급여가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급여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는 것이므로 공평의 이념 즉,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또한 자동차사고가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행위로 야기되어 그 제3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제3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게 된다. 이는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서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중복보상 조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현행제도 하에서 피해 근로자 측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보상청구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각각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보상 조정내용에 대하여 개관한다. 제 I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금 산정모형과 자료 등 연구방법론을 설명하고 제 IV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 V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중복급여 조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제 VI 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II. 중복보상 조정내용

### 1. 중복보상 조정 관련규정

#### 1)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손해보상을 청구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만 보상함을 보험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1>에서와 같다<sup>2)</sup>.

<표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산재보험과의 중복보상 관련 면책규정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14-1-(2)-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14-1-(2)-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

중복보상 조정규정에 의해 자동차사고가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의 행위로 야기되어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지급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산재보험법 제80조 규정 참조).

2)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1. 참조.

<표2> 산재보험법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자동차사고가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행위로 야기되어 그 제3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제3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산재 보험급여를 공제하게 된다(산재보험법 제87조 규정 참조).

<표3> 산재보험법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보험금지급기준의 비교

사망과 후유장해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표4>에서와 같고, 산재보험의 급여지급기준은 <표5>에서와 같다. <표4>와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기준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보험금의 한 항목으로 지급되는 반면 산재보험에서는 정신적 손해 항목인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금형태의 지급이 주된 급여 지급방법이다<sup>3)</sup>.

<표4>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

[사망보험금]	
항목	지급기준
장례비	300만원
위자료	- 사망자 연령 20세미만~60세이상: 4천만원, - 사망자 연령 20세이상~60세미만: 4.5천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X(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넛즈 계수)
[후유장해보험금]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사망자 위자료 X 장해율 X 70%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400만원 ~ 5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넛즈 계수)

(주)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과실상계 등” 규정 참조).

3) 자동차보험금의 연금형태 지급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마승렬,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13(2), 2002, pp.143-170. 마승렬, “상실수익액의 연금형태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3(2), 2010, pp.5-26. 마승렬, “손해액 산정에 적용되는 연금계리 방법의 합리화 방안,” 손해사정연구 5(1), 2013, pp.5-32.

<표5> 산재보험 급여 지급기준

[사망보험급여]		
항목	지급기준	관련 법규정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산재법 제71조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가산금액 ①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 ② 가산금액: 수급권자 1인당 5%(최고한도 20%)	산재법 제62조
	-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	
[후유장해보험급여]		
장해급여	- 장해보상연금: 장해1급: 329일분~장해7급: 138일분(평균임금기준) ※ 장해1급~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 장해4급~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가능	산재법 제57조
	- 장해보상일시금: 장해1급: 1,474일분~장해14급: 55일분(평균임금기준)	

(주) 연금 급여액은 60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평균임금상승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매년 증액 지급함.

### 3. 중복보상의 조정 대상이 되는 손해 항목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동차사고 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의 조정 대상이 되는 손해항목은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이 된 손해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 손해(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소극적 손해는 소극적 손해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되고, 적극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 지급항목 중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사망 상실



수익액은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치료관계비, 가정간호비, 장례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와는 달리 정신적 손해항목인 위자료는 산재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결정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이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산재보험금을 공제한다.<sup>4)</sup>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중복보상 조정규정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자의 보상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사례를 다각적으로 설정하여 분석 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피해자와 분석모형은 각각 다음과 같다.

#### 1. 분석대상 피해자

분석대상 피해자는 연령 30세, 40세, 50세의 3가지 연령계층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각각 0%, 10%, 20%, 50%인 4가지 사고유형을 설정한다. 후유장해 등급은 산재보험 장해 1급, 4급, 7급, 8급의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하며, 피해자 연령별 임금은 통계청 DB의 전산업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확정시점은 2011년 1월 1일로 가정한다.

#### 2. 보상금 산정모형

##### 1) 사망사고

4) 서울중앙지방법원(2005, 전게서) 참조.

(1) 자동차보험 사망 상실수익액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상실수익액 산정 시 생활비율은 1/3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이자는 법정이율 월 5/12%를 복리로 적용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사망 상실수익액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PV_A^s = \left( E_0 \times \frac{2}{3} \right) \times \sum_{t=1}^{T(a)} \left( \frac{1}{1+0.05/12} \right)^t \quad \text{식(1)}$$

여기서  $PV_A^s$  = 자동차보험의 사망 상실수익액 현재가  
 $E_0$  = 사망(t=0) 시점의 평균임금  
 $T(a)$  = 연령 a인 피해자의 가동가능기간  
 $\sum_{t=1}^{T(a)} \left( \frac{1}{1+0.05/12} \right)^t$  = 라이프넛쓰 계수

(2)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현재가

산재보험에서의 유족보상연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의 52%~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부양가족이 2인인 경우를 가정하여 지급률을 57%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60세까지는 매년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이 평균임금의 증감률에 연동되어 증감되며, 60세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다(산재보험법제36조제3항 규정 참조).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 현재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sup>5)</sup>

$$PV_W^s = (E_0 \times AR) \times \left[ \sum_{t=1}^n \left( \frac{1}{1+d} \right)^t \times {}_t p_a + \left( \frac{1}{1+d} \right)^n \sum_{t=n+1}^L \left( \frac{1}{1+d_c} \right)^t \times {}_t p_a \right] \quad \text{식(2)}$$

5) 류근욱·마승렬, “산재보험 장애보상 연금과 일시금 지급체계의 합리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29(1), 2013, pp.59-88.

여기서  $PV_W^s$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현재가  
 $AR$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지급율(= 57% 가정)  
 $L$  = 연령  $a$ 인 수급권자의 한계연령까지 남겨진 기간  
 $n$  =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시점  
 $d$  = 임금상승 순할인율 (=  $(r-g)/(1+g)$ )  
 $r$ =할인율,  $g$ =평균임금상승률  
 $d_c$  = 물가상승 순할인율 (=  $(r-i)/(1+i)$ )  
 $i$ =평균물가상승률  
 ${}_tP_a$  = 연령  $a$ 인 피해자의  $a+t$ 시점의 생존확률

## 2) 후유장애사고

### (1) 자동차보험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자동차보험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PV_A^d = (E_0 \times DR_j) \times \sum_{t=1}^{T(a)} \left( \frac{1}{1+0.05/12} \right)^t \quad \text{식(3)}$$

여기서  $PV_A^d$  = 자동차보험의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현재가  
 $DR_j$  = 피해자  $j$ 의 노동능력상실률

### (2) 산재보험 장애보상연금의 현재가

산재보험의 장애보상연금 현재가의 산정에 있어서도 유족보상연금 현재가 산정에  
 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단순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PV_W^d = (E_0 \times DR_w) \times \left[ \sum_{t=1}^n \left( \frac{1}{1+d} \right)^t \times {}_tP_a + \left( \frac{1}{1+d} \right)^n \sum_{t=n+1}^L \left( \frac{1}{1+d_c} \right)^t \times {}_tP_a \right] \quad \text{식(4)}$$

여기서  $PV_W^d$  = 산재보험 장애보상연금의 현재가  
 $DR_w$  =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

### 3. 자료

#### 1) 순할인율의 적용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의 현재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순할인율( $d$ 와  $d_c$ )의 값은 현재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임금상승 순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자료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2001년~2010년(10년)간 전산업 평균임금상승률과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상승 순할인율을 생성하였다.

동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d$ )을 확인한 바 -0.73%로 확인되었다. 한편, 물가상승 순할인율 시계열의 평균값( $d_c$ )은 연 1.7%를 각각의 산정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sup>6)</sup>.

<표6> 임금상승률,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순할인율의 평균값(2001년~2010년)

	전산업 평균 임금상승률: $g$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 $r$	임금상승 순할인율: $d$	물가상승 순할인율: $d_c$
평균값	6.24%	5.42%	-0.73%	1.7%

#### 2) 생존확률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의 현재산정 시 연령별 생존확률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공표한 2009년도 완전생명표 상 남자 생존율

6) 이승렬, "자동차사고로 장애를 입은 공장공무원의 보상효과 분석," GEPS연금포럼2, 2011, pp.13-36. 참조. 한편, 류근옥·이승렬(2013, 전제논문)의 연구에서는 과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물가상승 순할인율 시계열을 생성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값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인 2.17%를 물가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으로 사용한 바 있다. 순할인율 평균값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승렬,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할 순할인율의 결정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6(1), 2001, pp.143-172. Gamber, Edward N. and Robert L. Sorensen,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3), 1994, pp.503-512. Haslag, Joseph H., Michael Nieswiadomy, and D. J. Slottje,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8, 1991, pp.505-512.

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 3) 급여자료

본 연구의 현가산정에 사용하는 사고 직전시점 피해자가 지급받았던 평균임금 ( $E_0$ ) 자료는 통계청 DB의 2009년도 정규근로자 연령별 평균 월급여액 자료이며 <표7>에서와 같다.

<표7> 2009년도 정규근로자 연령별 평균 월급여액 (단위: 원)

연령대	평균 월급여액	피해자 연령	적용 월급여액
29세 이하	1,870,000	-	-
30~39세	2,670,000	30세	2,270,000
40~49세	3,081,000	40세	2,875,500
50~59세	2,891,000	50세	2,986,000

- (주) 1. 통계청DB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의 2009년도 정규근로자 연령별 평균 월급여액임 (평균 월급여액=조사보고서 상 월급여액+연간특별급여/12)  
 2. 본 연구의 실제분석에 적용하는 피해자 연령별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임  
 - 30세 월급여액 : 29세 이하 평균 월급여액과 30~39세 평균 월급여액을 평균한 값  
 - 40세 월급여액 : 30~39세 평균 월급여액과 40~49세 평균 월급여액을 평균한 값  
 - 50세 월급여액 : 40~49세 평균 월급여액과 50~59세 평균 월급여액을 평균한 값

## IV. 분석 결과

### 1. 사망사고의 경우 분석결과

#### 1) 손해액의 평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한 피해자 과실상계 후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은 각각 <표8>에서와 같았다.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과실의 정도에 따라 동일한 사고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8> 피해자 과실상계 후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연령	피해자 과실상계 후 사망보험금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30세	326,906,155	294,215,540	261,524,924	163,453,078
40세	335,474,000	301,926,600	268,379,200	167,737,000
50세	232,682,840	209,414,556	186,146,272	116,341,420

(주) 1. 정년은 모두 60세로 가정

2. 사망보험금은 사망상실수익액과 사망위자료를 합한 금액이며 장례비는 제외하였음

한편, 산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연금의 현가와 유족보상일시금은 <표9>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9> 산재보험 유족보상급여

	월급여액	연금급여액	유족보상연금 현가	유족보상일시금
30세	2,270,000	27,240,000	794,379,500	98,366,667
40세	2,875,500	34,506,000	754,444,171	124,605,000
50세	2,986,000	35,832,000	563,181,834	129,393,333

(주) 1. 유족보상연금의 지급률은 57% (부양가족 2인) 가정

2.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산재보험의 유족보상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유족보상일시금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지만 <표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의 연금현가와 일시금 급여 간에는 현저한 급여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되는 관계로 그 현가의 크기는 동일한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에 비해서도 현저히 더 큰 값을 보여준다.

7) 산재보험의 연금과 일시금 급여간의 형평성을 분석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정홍주·송용, "산재보험 장애·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리스크관리연구 19(2), 2008, pp.233-269. 마승렬·김명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체계의 적정성 분석," 보험개발연구 19(3), 2008, pp.119-163. 신중욱·마승렬, "이자율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재보험의 적정연금·일시금 수준의 평가," 노동정책연구 9(4), 2009, pp.1-28.

2) 피해자가 산재보험에 먼저 청구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효과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측에서 산재보험에 유족보상연금을 먼저 청구한 후 자동차보험에 초과손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절차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여 매월 지급받는다. ②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중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산재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표10>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수령 총 보상금 현가

	산재 유족보상연금	총 보상금 현가(산재 유족보상연금+자동차보험 보험금)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30세	794,379,500	1,022,918,988	990,228,373	957,537,757	859,465,911
40세	754,444,171	965,313,171	931,765,771	898,218,371	797,576,171
50세	563,181,834	666,471,341	643,203,057	619,934,773	585,681,834

(주) 1. 피해자 측에서는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면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중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일시금에서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사망위자료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  
 2. 50세 경우, 과실이 50%이면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이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보다 오히려 35,551,913원 적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자료 22,500,000원만을 추가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한편,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측에서 산재보험에 유족보상일시금을 먼저 청구 후 자동차보험에 초과손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절차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중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산재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표11>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수령 총 보상금 현가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	총 보상금 현가(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자동차보험 보험금)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30세	98,366,667	326,906,155	294,215,540	261,524,924	163,453,078
40세	124,605,000	335,474,000	301,926,600	268,379,200	167,737,000
50세	129,393,333	232,682,840	209,414,556	186,146,272	151,893,333

(주) 피해자 측에서는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액과 사망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표10>과 <표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측에서 산재보험에 유족보상연금을 먼저 청구한 후 자동차보험에 초과손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산재보험에 유족보상일시금을 먼저 청구 후 자동차보험에 초과손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효과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현가와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 간에 존재하는 급여의 불형평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 3)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먼저 청구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효과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에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으로도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먼저 청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규정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상실



수익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확인해보면 <표 12>에서와 같다.

<표12>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상실수익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30세	3,726	3,353	2,980	1,863
40세	3,031	2,727	2,424	1,515
50세	1,886	1,697	1,509	94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제76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이면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일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규정에 근거하여 유족보상연금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를 확인해보면 <표13>에서와 같다.

<표13> 유족보상연금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일수

	평균임금	유족보상연금(연간)	지급일수
30세	75,667	15,526,800	205
40세	95,850	19,668,420	205
50세	99,533	20,424,240	205

산재보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보험금 수령 후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표12>에 의하면 연령 50세, 과실 50%인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사망 상실수익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943일)가 산재보험 유족보상일시금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의 1,300일에 미달하여 산재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될 금액(357일분)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될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자동차보험금 수령 후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과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연금액과의 조정방법이 필요한데 이때의 조정방법으로는 자동차보험금을 시행령 규정에 의해 환산한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가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피해자들의 유족보상연금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를 확인해보면 연간 205일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상실수익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는 향후 <표14>에서와 같은 기간이 소요된다. 즉, 자동차보험금을 산재보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환산한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가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령 30세, 무과실 피해자의 경우에는 18.2년이 경과한 이후 시점부터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연령 50세, 과실 50%의 경우에는 4.6년이 경과한 이후 시점부터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표14> 자동차보험금의 환산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의 소요기간

(단위: 년)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30세	18.2	16.3	14.5	9.1
40세	14.8	13.3	11.8	7.4
50세	9.2	8.3	7.4	4.6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시점부터 환산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는 보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기 미결 건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청구시점에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현가를 산정한 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정산하는 방법을 중복급여 조정방법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 3. 후유장애사고의 경우 분석결과

#### 1) 손해액의 평가

자동차보험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급수별 과실상계 후 보상금을 산정해보면 <표15>에서와 같다.

<표15> 피해자 과실상계 후 자동차보험 장애보험금 (단위: 원)

	연령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장애 1급	30세	454,359,232	408,923,309	363,487,386	227,179,616
	40세	467,211,000	420,489,900	373,768,800	233,605,500
	50세	313,024,260	281,721,834	250,419,408	156,512,130
장애 4급	30세	313,507,870	282,157,083	250,806,296	156,753,935
	40세	322,375,590	290,138,031	257,900,472	161,187,795
	50세	215,986,740	194,388,066	172,789,392	107,993,370
장애 7급	30세	180,000,877	162,000,790	144,000,702	90,000,439
	40세	185,398,620	166,858,758	148,318,896	92,699,310
	50세	120,640,189	108,576,170	96,512,151	60,320,095
장애 8급	30세	145,772,139	131,194,925	116,617,711	72,886,069
	40세	150,141,740	135,127,566	120,113,392	75,070,870
	50세	97,718,249	87,946,424	78,174,599	48,859,124

- (주) 1. 정년은 모두 60세로 가정.  
 2.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시 적용할 노동능력상실률은 마승렬·김명규(2008, 전 계논문)에서의 환산노동능력상실률을 사용하여 분석함. 즉, 산재보험장애 1급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100%, 장애 4급의 경우 69%, 장애 7급의 경우 42%, 장애 8급의 경우 34%를 각각 가정하여 분석함.  
 3. 따라서 산재보험 장애1급 자동차보험 위자료는 45,000,000원\*100%\*70%=31,500,000원, 장애4급 위자료는 45,000,000원\*69%\*70%=21,735,000원, 장애7급 위자료는 2,400,000원, 장애8급 위자료는 2,000,000원이 됨(상세 내용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4. 후유장애보험금에 적극적 손해(치료관계비)는 제외하였음.

산재보험에서의 장애급수별 장애보상연금의 현가와 장애보상일시금은 <표16>에서와 같다. 산재보험의 유족보상급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연금과 일시

금 간에 매우 심한 급여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애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장애보상연금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되는 관계로 연금의 현가는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에 비해 현저하게 더 큰 값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6> 산재보험 장애보상급여

(단위: 원)

	연령	월급여액	연금여액	장애보상연금현가	장애보상일시금
장애 1급	30세	2,270,000	27,240,000	1,254,283,422	110,004,822
	40세	2,875,500	34,506,000	1,191,227,639	139,347,518
	50세	2,986,000	35,832,000	889,234,475	144,702,378
장애 4급	30세	2,270,000	27,240,000	850,125,430	75,525,699
	40세	2,875,500	34,506,000	807,387,622	95,671,430
	50세	2,986,000	35,832,000	602,703,366	99,347,901
장애 7급	30세	2,270,000	27,240,000	529,586,334	45,972,164
	40세	2,875,500	34,506,000	502,962,781	58,234,784
	50세	2,986,000	35,832,000	375,454,556	60,472,636
장애 8급	30세	2,270,000	27,240,000	-	36,941,918
	40세	2,875,500	34,506,000	-	46,795,808
	50세	2,986,000	35,832,000	-	48,594,082

- (주) 1. 장애보상연금 지급률은 장애1급: 90%(평균임금 329일분), 장애4급: 61%(평균임금 224일분), 장애7급: 38%(평균임금 138일분)임. 장애8급 이하는 일시금만 지급됨.  
 2. 고도 장애자(예: 장애1급)는 여명단축을 고려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장애자의 경우 여명단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가를 산정하였음.  
 3. 장애보상일시금은 장애1급: 평균임금의 1,474일분, 장애4급: 평균임금의 1,012일분, 장애7급: 평균임금의 616일분, 장애8급: 평균임금의 495일분임.

## 2) 피해자가 산재보험에 장애보상급여를 먼저 청구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효과

피해자 측에서 산재보험에 장애보상연금을 먼저 청구한 후 자동차보험에 초과손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자가 수령하는 총 보상금 현가는 <표17>에 서와 같다.

<표17>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수령 총 보상금 현황

	연령	산재보험장해보상연금현가	총 보상금 현황(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자동차보험 보험금)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장해 1급	30세	1,254,283,422	1,598,637,832	1,553,201,908	1,507,765,985	1,371,458,216
	40세	1,191,227,639	1,519,091,121	1,472,370,021	1,425,648,921	1,285,485,621
	50세	889,234,475	1,057,556,357	1,026,253,931	994,951,505	904,984,475
장해 4급	30세	850,125,430	1,088,107,602	1,056,756,815	1,025,406,028	931,353,667
	40세	807,387,622	1,034,091,782	1,001,854,223	969,616,664	872,903,987
	50세	602,703,366	719,342,205	697,743,531	676,144,857	613,570,866
장해 7급	30세	529,586,334	663,615,047	645,614,959	627,614,871	573,614,608
	40세	502,962,781	630,126,617	611,586,755	593,046,893	537,427,307
	50세	375,454,556	435,622,110	423,558,091	411,494,072	376,654,556

(주) 피해자측에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면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중 산재보험 장해 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자동차보험의 장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한편, 자동차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자동차보험에 초과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수령하게 되는 총 보상금은 <표18>에서와 같다. <표17>과 <표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으로 인한 장해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간에 피해자의 보상효과에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18> 산재보험 장해보상일시금을 먼저 청구한 경우 피해자수령 총보상금

(단위: 원)

	연령	산재보험장해보상일시금	총 보상금(산재보험 장해보상일시금+자동차보험 보험금)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장해 1급	30세	110,004,822	454,359,232	408,923,309	363,487,386	227,179,616
	40세	139,347,518	467,211,000	420,489,900	373,768,800	233,605,500
	50세	144,702,378	313,024,260	281,721,834	250,419,408	160,452,378

	연령	산재보험장해 보상일시금	총 보상금(산재보험 장해보상일시금+자동차보험 보험금)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장해 4급	30세	75,525,699	313,507,870	282,157,083	250,806,296	156,753,935
	40세	95,671,430	322,375,590	290,138,031	257,900,472	161,187,795
	50세	99,347,901	215,986,740	194,388,066	172,789,392	110,215,401
장해 7급	30세	45,972,164	180,000,877	162,000,790	144,000,702	90,000,439
	40세	58,234,784	185,398,620	166,858,758	148,318,896	92,699,310
	50세	60,472,636	120,640,189	108,576,170	96,512,151	61,672,636
장해 8급	30세	36,941,918	145,772,139	131,194,925	116,617,711	72,886,069
	40세	46,795,808	150,141,740	135,127,566	120,113,392	75,070,870
	50세	48,594,082	97,718,249	87,946,424	78,174,599	49,594,082

(주) 피해자 측에서는 산재보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 후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중 장해 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자동차보험의 장해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3) 피해근로자가 자동차보험에 먼저 청구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효과

자동차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으로도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먼저 청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장해보상금 여를 청구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산재보험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산 지급일수와 산재보험 지급일수 간 조정에 의해 중복급여 조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자동차보험에 장해보상금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상효과는 위의 <표18>에서와 같이 산재보험에 장해보상일시금을 먼저 청구 후 자동차보험에 초과손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금 수령 후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의 경우에서처럼 중복급여 조정에 있어서 동일한 복잡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해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보험급여 청구시점에

서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의 현가를 산정한 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정산하는 방법을 중복급여 조정방법의 개선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제5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V. 중복급여 조정방법 개선방안

### 1. 자동차보험 보상금과 산재보험 보상연금 현가와의 차액 확인

자동차보험으로 부터 보상금 수령 후 산재보험 연금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실제로 지급받게 될 산재보험 보상연금급여액 현가는 산재보험 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종신토록 지급될 연금의 현가에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상실수익액을 공제한 이후의 잔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족(또는 장애)보상연금의 현가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현가산정 모형(식(3), 식(5))들을 사용하여 유족(또는 장애)보상연금의 현가를 산정한 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상실수익액과의 차액을 확인해보면 <표19>와 <표20>에서와 같다.

<표19>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현가와 자동차보험 사망상실수익액과의 차액  
(단위: 원)

연령	산재보험 유족 보상연금현가	자보 상실수익액 공제 후 산재에서 지급해야할 차액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30세	794,379,500	512,473,345	540,663,961	568,854,576	653,426,423
40세	754,444,171	463,970,171	493,017,571	522,064,971	609,207,171
50세	563,181,834	375,498,994	394,267,278	413,035,562	469,340,414

<표20>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 현가와 자동차보험 장해상실수익액과의 차액  
(단위: 원)

	연령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현가	자보 상실수익액 공제 후 산재에서 지급해야할 차액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장해 1급	30세	1,254,283,422	831,424,190	873,710,113	915,996,036	1,042,853,806
	40세	1,191,227,639	755,516,639	799,087,739	842,658,839	973,372,139
	50세	889,234,475	607,710,215	635,862,641	664,015,067	748,472,345
장해 4급	30세	850,125,430	558,352,560	587,529,847	616,707,134	704,238,995
	40세	807,387,622	506,747,032	536,811,091	566,875,150	657,067,327
	50세	602,703,366	408,451,627	427,876,801	447,301,975	505,577,497
장해 7급	30세	529,586,334	351,985,456	369,745,544	387,505,632	440,785,895
	40세	502,962,781	319,964,161	338,264,023	356,563,885	411,463,471
	50세	375,454,556	257,214,367	269,038,386	280,862,405	316,334,461

<표19> 와 <표20>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금을 먼저 받은 후 추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어야 할 연금급여의 현가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상실수익액에 비해 현저히 큰 값을 가지므로 이들 간의 차액도 매우 큰 값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중복급여 조정방법 및 산재보상연금의 현가산정기준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금을 먼저 받은 후 2차적으로 산재보험에 보상연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경우 현행의 중복급여 조정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복급여 조정방법 및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산정기준을 <표 21>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sup>8)</sup>.

8) 마승렬(2011, 전제논문)의 연구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장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의 보상효과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 간의 중복급여 조정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표21> 중복급여 조정방법 및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산정기준(안)

		내용
중복급여 조정방법		산재보험급여 청구시점에서 자동차보험 보상금과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연금의 현가와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고 종결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산정기준		산재보험 유족(또는 장애)보상연금 청구시의 연금액에 장애의 연금수급자 기대여명(연금수급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뺀 금액
현가 산식	복리 할인 방법	<p>&lt;법정이율 연 5%를 적용<sup>9)</sup>하여 복리(compound)로 할인하는 방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족보상연금의 현가:</li> </ul> $PV_W^s = (E_0 \times AR) \times \left[ \sum_{t=1}^n \left( \frac{1}{1+d^*} \right)^t + \left( \frac{1}{1+d^*} \right)^n \sum_{t=1}^{e(a)} \left( \frac{1}{1+d_c^*} \right)^t \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해보상연금의 현가:</li> </ul> $PV_W^d = (E_0 \times DR_w) \times \left[ \sum_{t=1}^n \left( \frac{1}{1+d^*} \right)^t + \left( \frac{1}{1+d^*} \right)^n \sum_{t=1}^{e(a)} \left( \frac{1}{1+d_c^*} \right)^t \right]$
	단리 할인 방법	<p>&lt;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simple)로 할인하는 방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족보상연금의 현가:</li> </ul> $PV_W^s = (E_0 \times AR) \times \left[ \sum_{t=1}^n \left( \frac{1}{1+d^*t} \right) + \left( \frac{1}{1+d^*n} \right) \sum_{t=1}^{e(a)} \left( \frac{1}{1+d_c^*t} \right) \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해보상연금의 현가:</li> </ul> $PV_W^d = (E_0 \times DR_w) \times \left[ \sum_{t=1}^n \left( \frac{1}{1+d^*t} \right) + \left( \frac{1}{1+d^*n} \right) \sum_{t=1}^{e(a)} \left( \frac{1}{1+d_c^*t} \right) \right]$
현가 이자 산식 공제 방법	중간 이자 공제 방법	<p>여기서 <math>e(a)</math> = 물가상승률 적용시점(n+1)에서 기대여명까지의 기간  <math>d^*</math> = 임금상승 순할인율(= 0.05 - g), 단 <math>\max(d^*, 0)</math>  <math>g</math> =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의 변동률  <math>d_c^*</math> = 물가상승 순할인율(= 0.05 - i), 단 <math>\max(d_c^*, 0)</math>  <math>i</math> = 물가상승률</p> <p>※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과거 10년간의 평균값을 적용함</p>

9) 손해액의 현가산정 시 법원에서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단리로 적용하는 방법(호프만식 산정 방법)을 주로 취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 배상액의 현가 산정 시 민사법정이율을 단리로 적용하는 호프만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배상법시행령제6조제3항 규정 참조).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마승렬(2011, 전제논문) 참조.

### 3. 연금급여의 현가산정 지급기준(안)에 의한 계산 예시

#### 1) 순할인율의 적용

현가산정에 적용할 순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의 변동률( $g$ )과 물가상승률( $i$ ) 값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청 DB에서 구한 2001년~2010년(10년간)의 전산업, 전규모 평균 임금상승률을 확인해 본 바 연 6.24%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법정이율 연 5%보다 임금상승률값이 더 크므로 실제 현가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d^*$ )은 영(zero)이 된다( $\max[5\%-6.24\%, 0]$ ). 한편 동 기간의 소비자물가등락률(전년비)은 연 3.19%이므로 물가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d_c^*$ )은 1.81%(=5%-3.19%)가 된다.

<표22> 분석에 사용할 순할인율의 값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d^*$ )	물가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d_c^*$ )
적용 순할인율	0%	1.81%

#### 2) 기대여명

통계청에서 공표한 완전생명표(각세별) 상 연령별 기대여명(남자)은 <표23>에 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생명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현실모형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비교 목적으로 2009년 생명표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기대여명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60세 도달 이후 시점부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 기간은 피해자 연령 30세의 경우 17년, 40세의 경우 18년, 50세의 경우 19년이 된다.

<표23> 남자 기대여명

	30세	40세	50세
2009년 생명표	47.92	38.40	29.36

### 3) 산재보험 보상연금액의 현재가치

#### (1)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현가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의 현가는 <표24>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24> 현가산식에 의해 산정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현가

	복리할인방법	단리할인방법
30세	691,275,988	694,118,090
40세	693,223,842	697,418,144
50세	530,146,100	535,173,935

(주)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임금상승 순환인율의 평균값이 영인 경우( $d^*=0$ ) 유족보상연금의 현가산정 모형은 다음과 같이 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 복리할인방법:  $PV_W^s = (E_0 \times AR) \times \left[ n + \sum_{t=1}^{e(a)} \left( \frac{1}{1+d_c^*} \right)^t \right]$

- 단리할인방법:  $PV_W^s = (E_0 \times AR) \times \left[ n + \sum_{t=1}^{e(a)} \left( \frac{1}{1+d_c t} \right) \right]$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의 현가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의 현가는 <표25>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25> 현가산식에 의해 산정한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의 현가

(단위: 원)

	연령	복리할인방법	단리할인방법
장해 1급	30세	1,091,488,401	1,095,975,931
	40세	1,094,563,961	1,101,186,543
	50세	837,072,789	845,011,477
장해 4급	30세	739,786,583	742,828,131
	40세	741,871,129	746,359,768
	50세	567,349,335	572,730,001
장해 7급	30세	460,850,658	462,745,393
	40세	462,149,228	464,945,429
	50세	353,430,733	356,782,624

(주)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이 영인 경우( $d^*=0$ ) 장해보상연금의 현가산정 모형은 다음과 같이 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 복리할인방법:  $PV_W^s = (E_0 \times DR_w) \times \left[ n + \sum_{t=1}^{e(a)} \left( \frac{1}{1+d_c^*} \right)^t \right]$

- 단리할인방법:  $PV_W^s = (E_0 \times DR_w) \times \left[ n + \sum_{t=1}^{e(a)} \left( \frac{1}{1+d_c^*t} \right) \right]$

이와 같이 <표24>, <표25>에서 우리는 산재보험 보상연금급여의 지급기준(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앞의 제4장에서 현실모형(식(3), 식(5))을 이용해 산정한 현가의 크기에 비해 조금 더 작은 값이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로 할인율의 적용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안)에서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을 영(zero)보다 큰 값( $d^* > 0, d_c^* > 0$ )으로 제한을 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와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과의 차액**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와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과의 차액은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연금급여를 청구한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시금 현가로 지급해주어야 할 금액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중 단리할인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와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과의 차액을 확인해보면 <표26>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26> 산재보험 유족연금 현가(단리할인방법)와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과의 차액

연령	산재보험 유족 보상연금현가	자보 상실수익액 공제 후 산재에서 지급해야할 차액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30세	694,118,090	412,211,935	440,402,550	468,593,166	553,165,012
40세	697,418,144	406,944,144	435,991,544	465,038,944	552,181,144
50세	535,173,935	347,491,095	366,259,379	385,027,663	441,332,515

<표27> 산재보험 장해연금 현가(단리할인방법)와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과의 차액

	연령	산재보험 장해 보상연금현가	자보 상실수익액 공제 후 산재에서 지급해야할 차액			
			과실: 0%	과실: 10%	과실: 20%	과실: 50%
장해 1급	30세	1,095,975,931	673,116,699	715,402,622	757,688,546	884,546,315
	40세	1,101,186,543	665,475,542	709,046,642	752,617,742	883,331,042
	50세	845,011,477	563,487,216	591,639,642	619,792,069	704,249,347
장해 4급	30세	742,828,131	451,055,261	480,232,548	509,409,835	596,941,696
	40세	746,359,768	445,719,178	475,783,237	505,847,296	596,039,473
	50세	572,730,001	378,478,261	397,903,435	417,328,609	475,604,131
장해 7급	30세	462,745,393	285,144,516	302,904,603	320,664,691	373,944,954
	40세	464,945,429	281,946,809	300,246,671	318,546,533	373,446,119
	50세	356,782,624	238,542,434	250,366,453	262,190,472	297,662,529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과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 간에 매우 큰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재보험 보상연금이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되는 급여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산재보험 보상연금 지급기준이 피해자가 실제 입은 현실 손해액을 지나치게 과대 보상하는 매우 후한 보상제도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 VI. 결론

손해배상실무에서는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상금과 산재보험 보상급여 간에 이중보상이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급여 조정이 이루어

10) 본 연구에서의 주된 논의사항은 현행제도 하에서의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중복급여조정 방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들이 산재보험급여의 연금과 일시금 간 불형평성에 대하여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지면관계 상 여기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산재보험급여의 연금과 일시금 간 불형평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는 정홍주·송용(2008, 전계논문), 마승렬·김명규(2008, 전계논문), 신종욱·마승렬(2009, 전계논문), 류근옥·마승렬(2013, 전계논문)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지고 있는데 중복급여 조정 문제는 ①자동차사고가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의 행위로 야기된 경우와 ②자동차사고가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행위로 야기되어 그 제3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중복보상 조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현행제도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보상청구방법을 확인해 보았다. 즉, 산재보험의 연금현가와 일시금 간의 현저한 금액 차이로 인해 연금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피해자 측에서는 재무적으로 보다 많은 보상금 지급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의 선택에 의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에 먼저 청구 후 자동차보험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자동차보험에 먼저 청구 후 산재보험에 보상연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상효과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보험에 먼저 청구 후 산재보험에 유족(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비록 보상연금을 청구하였지만 보상연금의 청구시점부터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의 환산 지급일수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는 보상금 지급이 정지되어 보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장기 미결 건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청구시점에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현가를 산정한 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방법을 중복급여 조정방법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효과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중복보상 조정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중복보상 조정 규정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1.
- 류근옥·마승렬, “산재보험 장해보상 연금과 일시금 지급체계의 합리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29(1), 2013, pp.59-88.
- 마승렬,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할 순환인율의 결정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6(1), 2001, pp.143-172.
- \_\_\_\_\_,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13(2), 2002, pp.143-170.
- \_\_\_\_\_, “상실수익액의 연금형태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3(2), 2010, pp.5-26.
- \_\_\_\_\_, “자동차사고로 장애를 입은 공상공무원의 보상효과 분석,” GEPS연금포럼2, 2011, pp.13-36.
- \_\_\_\_\_, “손해액 산정에 적용되는 연금계리 방법의 합리화 방안,” 손해사정연구 5(1), 2013, pp.5-32.
- \_\_\_\_\_, 김명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체계의 적정성 분석,” 보험개발연구 19(3), 2008, pp.119-163.
-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신종욱·마승렬, “이자율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재보험의 적정 연금·일시금 수준의 평가,” 노동정책연구 9(4), 2009, pp.1-28.
- 정홍주·송용, “산재보험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리스크관리연구 19(2), 2008, pp.233-269.
- Gamber, Edward N. and Robert L. Sorensen,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3), 1994, pp.503-512.
- Haslag, Joseph H., Michael Nieswiadomy, and D. J. Slottje,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8, 1991, pp.505-512.

##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claimant's compensation effect due to the provisions to adjust dual compensation between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a case of work related car accident, due to the provisions to adjust dual compensation, workers' compensation company should hold the monthly payments of pension benefits for a long time when the claimant request pension benefits after receiving money from automobile insurer. As a result, the claimants can not receive pension benefits from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at the time they request. In addition, workers' compensation company also confront with very inefficient situation because the case should be managed although there is no payments of pension benefit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claimant's compensation effect can be chang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claim after work related car accident. Related to this, we suggested methods of calculating present value of annuities to solve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s to adjust dual compensation between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Key words** : automobile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ual compensation, pension benefits, present values of annuity